

[화성산업진흥원 공고 제2025-211호]

## 화성시 창업지원플랫폼 입주기업 모집공고

화성시 창업생태계의 중심·기반 역할을 수행할 “화성시 창업지원플랫폼”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저렴한 보육료의 업무공간 공급, 코워킹 및 회의공간 제공, 각종 창업프로그램 지원 등 종합보육 서비스 기능을 보유한 화성시 대표 창업 인프라에서 지역 선도기업으로 성장할 미래 스타트업의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2025. 9. 22.

(재)화성산업진흥원장

**화성시 창업지원플랫폼(6~7층)은 화성시 창업지원플랫폼 플러스(5층)와는  
별도의 공간으로, 양 입주기업 모집 공고에 중복 신청할 경우  
접수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공간개요

- 가. 공간명: 화성시 창업지원플랫폼  
나. 공간위치: 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1로 57, LH 인큐베이팅센터 6~7층  
다. 인큐베이팅센터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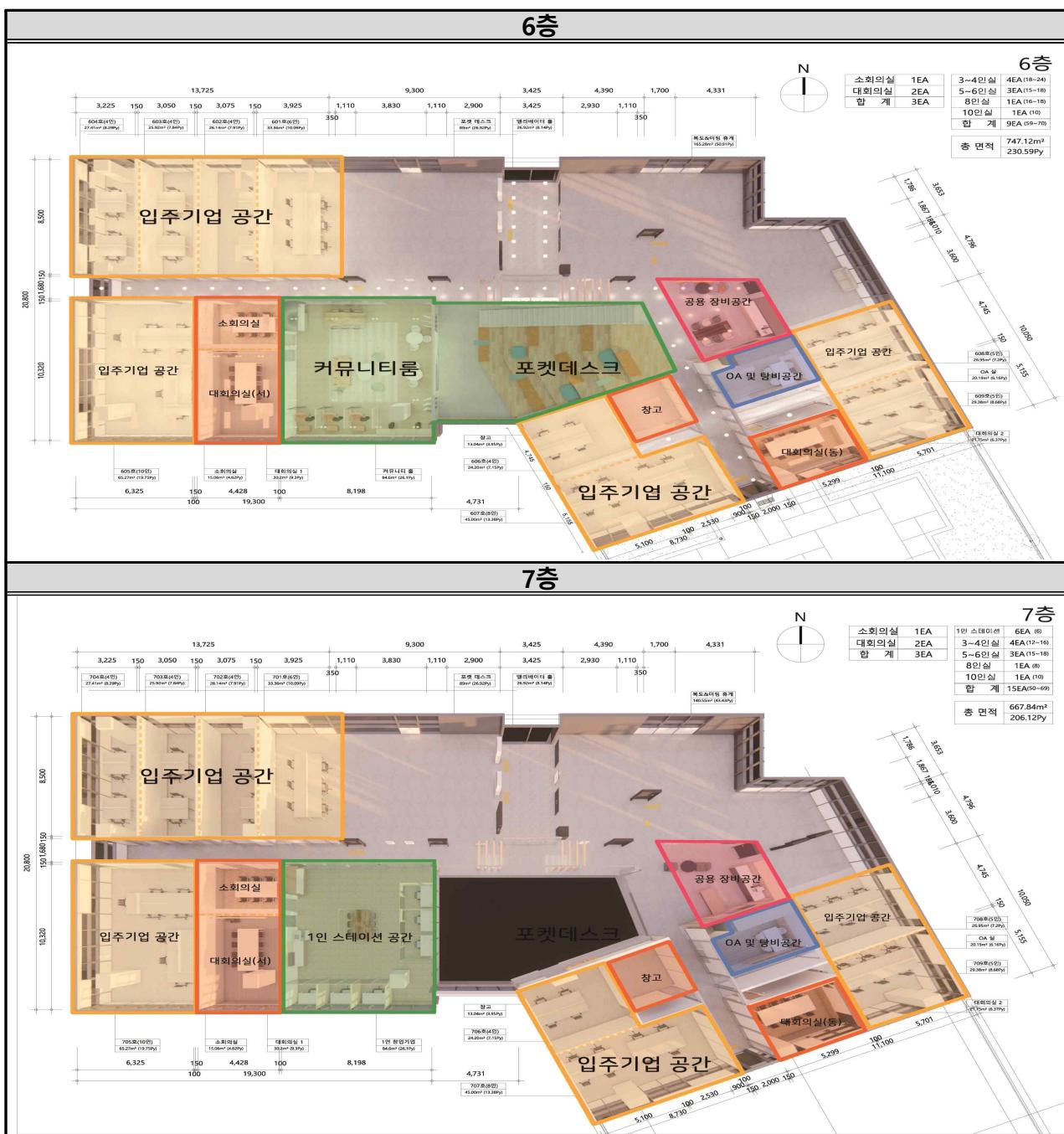
구 분	주요시설	조감도
지하 1~2층	지하주차장	
1층	중소기업지원센터, 공용공간, 창고, 근린생활시설, 관리사무소	
2층~7층	코워킹스페이스, 동탄소공인복합지원센터(2F), 미팅룸, 다목적홀, <b>화성시 창업지원플랫폼(6~7층)</b>	

### 라. 화성시 창업지원플랫폼 안내

- (운영주체) 재단법인 화성산업진흥원
- (시설안내) 인큐베이팅센터 6~7층 내

구 분	주요시설	조감도	
6층	601~609호(4~10인실), 대/소회의실, 커뮤니티홀, 창고 등		
7층	701~709호, 대/소회의실, 710~715호(1인 스튜디오) 등		

### ○ (충별도면) 인큐베이팅센터 6~7층



○ (협약기간) 2026. 1. 1. ~ 12. 31. (1년)

\* 협약시작일의 경우 모집 일정에 따라 연기될 수 있음.

\*\* 개별로 협약 시작일을 조정할 수 없음.

○ (입주기간) 입주 연장평가를 거쳐 협약 만료 시점부터 1년 연장 가능(최대2년)

○ (호실안내) 총 24실 보유

○ (월보육료) 좌석당 월 5만원(VAT 별도), 별도의 임차료, 보증금 및 관리비 없음.

[공간 탑입 및 보육료]

구분	호수(면적(m <sup>2</sup> ))	월보육료(원) * VAT 별도	전체 실수	모집 호실
층	타입			
6층	4인실	602호(26.14), 603호(25.92), 604호(27.41), 606호(24.2)	200,000	4실 <b>1실</b>
	5인실	608호(26.95), 609호(29.38)	250,000	2실 <b>1실</b>
	6인실	601호(33.36)	300,000	1실 <b>1실</b>
	8인실	607호(45)	400,000	1실 <b>0실</b>
	10인실	605호(65.27)	500,000	1실 <b>0실</b>
7층	1인실	710호, 711호, 712호, 713호, 714호, 715호 (3.35)	50,000	6실 <b>2실</b>
	4인실	702호(26.14), 703호(25.92), 704호(27.41), 706호(24.2)	200,000	4실 <b>1실</b>
	5인실	708호(26.95), 709호(29.38)	250,000	2실 <b>0실</b>
	6인실	701호(33.36)	300,000	1실 <b>0실</b>
	8인실	707호(45)	400,000	1실 <b>0실</b>
	10인실	705호(65.27)	500,000	1실 <b>0실</b>
<b>합계</b>				<b>24실 6실</b>

**관련 유의사항**

1) 월 사용료는 **협약기간만큼 입주시 선납**

\* 예) 4인실 기준, 1년치 선납금: 20만원 \* 12개월 = 240만원(VAT별도)

2) 협약 만료 전 **중도 퇴실 시 선납한 사용료는 환급되지 않음.**

3) 사용료는 실제 입주인원과 관련 없이 실별 **좌석 수 기준으로 고정비용 부과됨.**

\* 예) 4인실 기준, 5인 이용 또는 3인 이용 모두 월 20만원(4인 \* 5만원) 부과

\*\* 추가 인원에 대한 필요 사무집기는 자체 부담

4) **평가 최고점 순으로 1지망 사무실 탑입에 우선 배치**되며, 특정 탑입이 먼저 만실되었을 경우 2지망, 3지망한 호실에 고득점순 재배정. 단, **부득이하게 지망한 탑입에 모두 배정 되지 못한 경우 진흥원에서 임의배정할 수 있음.**

\* 지망 가능한 호실의 규모는 상근직 근로자수×2를 초과하지 못함

예) 상근직 근로자 3인일 경우 최대 6인실 선택 가능(4대보험 가입자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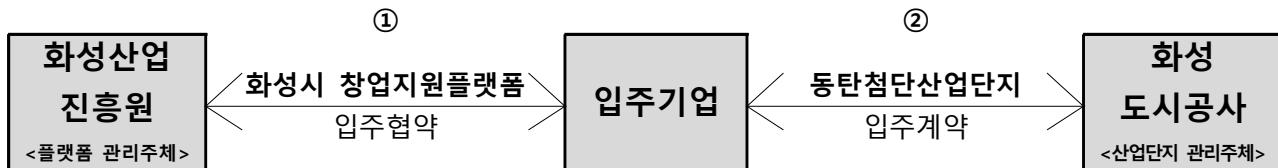
\*\* 입주 후 사무공간 활용률이 저조할 경우 연장평가에 반영될 수 있음

\*\*\* 배치된 탑입에 입주를 원치 않을 경우 포기 가능하며 차순위 기업으로 순서 넘어감.

\*\*\*\* 특정 호수를 지정하여 입주는 불가함.

\*\*\*\*\* 입주포기 의사 표시한 이후 번복 불가함.

## 마. 공간입주 계약절차



- 화성시 창업지원플랫폼이 있는 LH인큐베이팅 센터가 동탄도시첨단산업단지 내에 위치하는 관계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동탄도시첨단산업단지계획」에 따라 입주대상 업종이 정해져 있음
- 산업단지 입주가능 업종은 '[참조2] 입주가능 업종(171개)'에서 확인 가능하며, 입주가능 업종코드와 신청업종이 일치하여야 함.
  - \* 진흥원은 신청자가 기입한 업종코드로만 판단함. 추후 도시공사에서 제출서류 기반으로 산업단지 입주 가능 여부에 대해 검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부적격 또는 불합 처리될 수 있음.
- 최종 입주 선정기업은 화성도시공사에 도시첨단산업단지 입주신청 → 진흥원과 입주협약 체결 → 화성도시공사와 산업단지 입주계약 체결
- 본 공간은 진흥원이 인큐베이팅센터 임대인인 LH로부터 공간을 임차하여 공간 지원 사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입주기업의 경우 LH와는 별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치 않으며 공간 운영주체인 진흥원과 입주공간 협약(사용대차 계약)을 체결함.

## ◆ 모집개요

가. 모집대상: 화성시 창업지원플랫폼(가칭) 입주를 희망하는 스타트업(공고 마감일 기준 창업 7년 이내) 또는 예비창업자

나. 모집규모: 최대 6개사

다. 공고기간: 2025. 9. 22.(월) ~ 2025. 10. 16.(목) 16:00까지

- (현장개방일) 2025. 9. 26.(금), 9. 29.(월), 9. 30.(화), 3일간 일별 3시간(14시~17시) 개방

\* 공간 입주를 희망하는 인원에 한하여 공간 방문 가능, 현장 개방일 외 방문 불가(사전 예약 및 연락 必)

\*\* 1인실의 경우 책상 1개 들어갈 정도의 공간으로 규모가 협소하니 지원 전 현장 확인 권고

라. 접수기간: 2025.9.22.(월) 10:00 ~ 2025.10.16.(목) 16:00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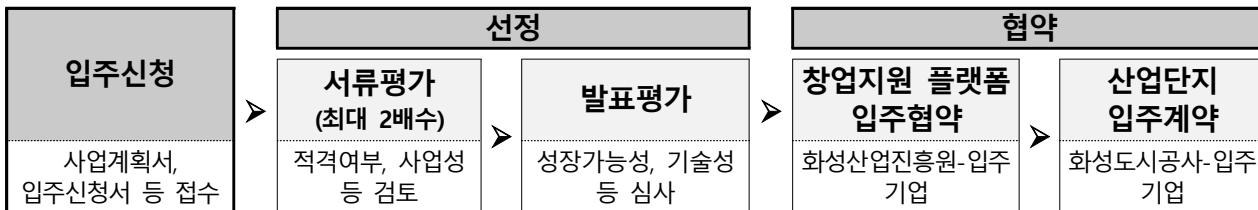
마. 접수방법: 홈페이지 접수

- '화성시 기업지원플랫폼' 접속(platform.hsbiz.or.kr) → 회원가입 → 지원사업공고 → '화성시 창업지원플랫폼 입주기업 모집 공고' 클릭 후 참여신청

\* 기업지원플랫폼 이외 경로로 신청한 경우 무효

## ◆ 선정방법

### 가. 선정 및 협약절차



### 나. 평가방식

- (적격여부 판단) 입주조건 여부, 창업기업 여부 등 검토

\* 단, 진흥원에서 적격판단 되었더라도 추후 화성도시공사에서 산업단지 입주에 대한 추가검토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서 산업단지 입주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공간입주 불가할 수 있음.

- (1차 서류평가) 입주신청서, 회사소개서 등 제출서류를 외부위원이 평가

- (2차 발표평가) 서류평가 통과자 대상으로 발표평가 운영

다. 평가항목: 입주자격 확인 및 기술성, 성장 가능성 등 평가

라. 선정기준: 평최고 · 최저 제외 평균 7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

- (1차 서류평가) 고득점순 선발(70점 미만 과락), 최종선발 인원의 최대 2배수

- (2차 발표평가) 고득점순 선발(70점 미만 과락), 최대 6개사 선발

- 단, 정원 미달이어도 전형 단계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마. 심사일정

- (1차 서류평가) 접수 완료 후 3주 이내(적격여부 검토 후)

- (2차 발표평가) 홈페이지 내 서류심사 결과공고 시 별도 공지

바. 결과공고: 발표심사 후 2주 내 홈페이지 내 공지

사. 제출서류 (필수제출 서류) 적색 '●' 표시, (선택제출 서류) 검은색 '●' 표시

업로드 단계 <3단계 신청정보 입력 中>	제출항목	비고
「제출서류 업로드」	● (서식 제1호) 입주신청서, 사업계획서 ● (서식 제2호) 서약서, 동의서 등	PDF 형식으로 제출  - 창업기업확인서의 경우 발급에 최대 10일까지 소요 - 사업자등록사실여부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발급 가능
	● 창업기업확인서(창업진흥원 발급) 1부 ※ 예비창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사실여부로 대체 가능	대표 외 직원보유한 경우 제출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1부	법인기업인 경우 필수제출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1부	Tips/유니콘/벤처기업 선정 등 우수실적 제출가능, zip파일로 압축
	● 인증, 수상, 투자 등 실적증빙자료	예비창업자는 불필요, 개인 및 법인 기업만 제출
「필수정보 조회 및 제출」 - 파인드 시스템 <sup>7)</sup> 또는 직접제출 방식 중 선택하여 제출 가능	●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명) 1부	예비창업자의 경우 개인용으로 제출
	● 국세 완납 증명서 1부	
	●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 관련 유의사항

- 1) 신청서식은 홈페이지의 사업공고 페이지 내에서 다운로드 가능
- 2) 발급서류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또는 **유효기간 내** 발급분만 제출
- 3) 사실증명서는 모든 정보내역 포함하여 발급하며, 기간설정 하지 않거나 모든 이력 보이도록 설정할 것(단,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개인정보는 블러처리 가능)
- 4) 신청기업 외 다른 개인사업자 보유 중인 경우, 해당 사업자등록증 추가 제출(복수 사업자인 경우 모두 제출)
- 5) 폐업이력 있는 경우, 폐업사실증명원 추가 제출
- 6) 개인사업자를 상속(또는 증여) 받아 설립한 경우 상속/증여 확인서류 추가제출
- 7) 파인드 시스템 미사용시 '직접제출' 버튼 누르면 해당 서류도 수동 업로드 가능  
- '파인드 시스템'이란? : 민원발급서류 자동 업로드 기능, 프로그램 별도 설치필요

## ◆ 입주조건

### 가. 입주자격: 공통조건 모두 충족한 ① 스타트업 또는 ② 예비창업자

구분	입주 필요조건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및 「동탄도시첨단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입주가능 업종 중 <b>스마트시티 산업분야* 스타트업 또는 스마트시티 산업분야로 창업 예정이어야 함.</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마트시티 산업분야 세부 대상은 아래 '나. 입주대상업종' 확인</li> </ul> </li> <li>○ <b>본점 이전(기창업자) 또는 본점 신규창업(예비창업자) 예정이어야 함.</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소 및 공장 등록은 불가</li> <li>** 현 주소지는 입주자격과 무관</li> </ul> </li> </ul>													
① 스타트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고 마감일 기준 <b>업력 7년* 이내</b>의 개인 또는 법인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력요건 해당여부 참조</li> </ul> </li> <li>-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명) 상 '개업연월일' 기준</li> <li>- 법인사업자: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li> <li>- 단, 다수의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를 보유하였거나 이력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창업인정 기준표(참조1)에 의거하여 업력 7년 이내 판단함.</li> </ul>													
② 예비창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본인 접수일 기준 사업자등록(개인/법인)이 되어있지 않은 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정 시 협약 1개월 이내 반드시 화성시 창업지원플랫폼 주소지로 <b>사업자 등록 완료必</b></li> </ul> </li> <li>○ <b>예비창업자는 신규창업인 경우만 인정하며, 창업 종류별(개인/법인) 신규창업 인정여부는 창업인정 기준표(참조1)에 의거하여 판단</b></li> </ul>													
우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업 3년 이내 기업, 유니콘 인증 기업 등 서류평가에 한해 가점을 부여</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분</th> <th>가점 부여 기준</th> <th>대상</th> <th>가점 규모</th> </tr> </thead> <tbody> <tr> <td>1</td> <td>공고 마감일 기준 창업 3년 이내 초기기업 (예비창업자는 제외)</td> <td rowspan="3">서류평가</td> <td rowspan="2">+5점</td> </tr> <tr> <td>2</td> <td>유니콘 인증, 벤처기업 인증, 투자유치 실적 보유</td> </tr> <tr> <td>3</td> <td>2023~2024 화성시 중소기업대상 수상 기업</td> <td>서류평가 면제</td> </tr> </tbody> </table>	구분	가점 부여 기준	대상	가점 규모	1	공고 마감일 기준 창업 3년 이내 초기기업 (예비창업자는 제외)	서류평가	+5점	2	유니콘 인증, 벤처기업 인증, 투자유치 실적 보유	3	2023~2024 화성시 중소기업대상 수상 기업	서류평가 면제
구분	가점 부여 기준	대상	가점 규모											
1	공고 마감일 기준 창업 3년 이내 초기기업 (예비창업자는 제외)	서류평가	+5점											
2	유니콘 인증, 벤처기업 인증, 투자유치 실적 보유													
3	2023~2024 화성시 중소기업대상 수상 기업		서류평가 면제											

### 나. 입주대상 업종: 제조업 및 서비스업 중 동탄도시첨단산업단지 입주가능 업종

\* 업종은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명서상에 명시된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KSIC) 기준을 적용함.

\*\* 입주가능 업종 171개 목록 [참조2] 확인

다. 입주불가 업종: 동탄도시첨단산단기본계획상 도시형 공장 불허기준에 해당하는 업종

#### 도시형 공장 불허업종

도시형공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한다.

- 1) 「대기환경보전법」제2조 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 2) 「대기환경보전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 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 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써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 5) 「폐기물관리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 6) 「소음진동 관리법」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 라. 그 밖의 제외대상

##### ○ 업종 이외 사유로 부적격에 해당하는 자는 입주불가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지원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부적격 사유

- 1) 공고일 기준 업력 7년 초과인 경우
- 2) 신청서, 발표자료 등 허위기재가 발견된 경우
- 3)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 4)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경우
- 5) 휴·폐업 혹은 파산·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6)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sup>\*</sup>  
\* 근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 7)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sup>\*</sup>  
\* 근거: [참조1] 창업기업 인정기준
- 8) 그 외 제재사항 또는 기타 사유에 해당되어 본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 9) 2023~2025년 화성시 창업지원플랫폼 입주 및 퇴거 이력이 있는 경우

#### ◆ 기타사항

- 제출한 일체 서류 및 물품은 평가를 위해 사용되며 반환하지 않음.
- 제출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는 화성도시공사에서 입주업종 확인을 위해 검토할 수 있음.
- 참여자는 동 공고문 및 지침(기준), 기타 진흥원의 안내자료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을 신청한

참가자에게 있음.

- 타인의 아이디어, 기술 등을 모방하여 선정되었을 경우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참가자 본인에게 있음.
- 선정결과 통보 또는 협약 이후 일방적 참가 취소 시 향후 유사 사업에 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참가자는 향후 성과보고서, 결과물, 설문조사, 실적 제출 등 진흥원 요청에 협조 하여야 하며, 이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차후 화성산업진흥원이 지원하는 사업에 참가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사업 참여 대상기업으로 선정 시 진흥원 지원사업 성과조사를 위한 관리시스템 가입 필수 - 사업 선정 시 성과관리 시스템 가입링크 안내 예정, 미 가입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 문의처

□ 사업관련: (재)화성산업진흥원 창업벤처팀

- ☎ 031-377-1532 ☐ choi@hsbiz.or.kr

\* 전화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이메일 문의요망

\*\* 상기 공고내용은 진흥원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가능

**(재)화성산업진흥원장**

## 참조 1

## 창업기업 인정 기준

총사업자등록내역 확인결과 ①업력기준 초과한 다수의 사업자(개인·법인)를 소지하고 있거나 ②폐업 또는 기타 변동 이력이 있는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라 신청자격 적합여부 결정

<창업기업 인정 기준표>

신청구분	상세 구분		창업여부	업력 인정기준
<b>공고 마감일 기준 창업 7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인</b>				
<b>개인 기업</b>	타인으로부터 상속/증여를 받아	동종 개인사업을 개시한 경우 이종 개인사업을 개시한 경우	창업아님 창업	- 이종 개인사업자 개시일
	다른 개인사업자를 운영하며	신규로 개인사업을 개시한 경우	창업아님	가장 빠른 개인사업자 창업일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한 뒤	이종 개인사업을 개시한 경우	창업	이종 개인사업자 개시일
		동종 개인사업을 개시한 경우	창업 폐업 3년 초과 폐업 3년 까지 부도/파산 - 2년 초과 부도/파산 - 2년 까지	동종 개인사업자 개시일 -
		신규로 개인사업을 개시한 경우	창업 창업아님 창업 창업아님	동종 개인사업자 개시일 -
	기존 법인사업자를 유지 또는 폐업한 뒤		창업	개인사업자 개시일
<b>법인 기업</b>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한 뒤	이종 법인사업을 개시한 경우	창업	이종 법인사업자 개시일
		동종 법인사업을 개시한 경우	창업 폐업 3년 초과 폐업 3년 까지 부도/파산 - 2년 초과 부도/파산 - 2년 까지	동종 법인사업자 개시일 -
		동종 법인사업으로 전환한 경우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개인사업자의 창업자 지위승계
				양수이전 동일대표의 개인사업자 개시일
	기존 개인사업자를 유지하며	이종 법인사업을 개시한 경우	창업	이종 법인사업자 개시일
		동종 법인사업을 개시한 경우	창업아님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 또는 최대주주	-
			창업	동종 법인사업자 개시일
	자회사 여부	법인주주(임원 포함)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대주주	창업아님	-
	과점주주 여부	다른 법인의 과점주주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초과 소유	창업아님	
	회사형태 변경	동종을 유지한 경우 이종으로 변경한 경우	창업아님 창업	- 변경일

- \*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인 창업기업(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창업여부 판단)이고, 양도-양수기업 간 대표자 동일, 동종 업종,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완료, 양도기업의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야 함
- \* **동종의 범위** :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를 기준으로 세세분류(코드번호 5자리)가 모두 일치하면 "동종"
- \* **과점주주** :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
- \* **창업지원법 시행령 부칙 제2조(창업 범위의 변경에 따른 종전 창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 ① 2020.10.8.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시행령 제31108호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인정
  - "개인사업자 설립일이 '20.10.8. 이전이면서, 다른 장소에서 이업종의 개인사업자를 설립"한 경우 "창업"으로 판단
  - ② 영 시행(2022.6.29.)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영 제2조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인정

## 참조 2

## 입주가능업종(화성시 지역 전략산업 표준산업분류코드) 171개

**한국표준산업분류(5자리)**는 통계작성 목적의 표준분류이며, 국세청 업종분류코드(6자리)는 국세행정 목적의 분류입니다. 사업자등록증에 기입되는 업종분류코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아닌 국세청 업종분류코드(6자리)로서, 국세청 업종코드와 표준산업분류 코드는 서로 연계되어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국세청 업종분류코드를 통해 표준산업분류코드 확인이 가능합니다.

- 국세청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기타 조회 >> 기준·단순 경비율 업종코드 >>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 연계표(엑셀)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대분류	표준산업분류코드	업무내용
제조업	26111	메모리용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제조업	26112	비메모리용 및 기타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제조업	26121	발광 다이오드 제조업
제조업	26129	기타 반도체 소자 제조업
제조업	26211	액정 표시장치 제조업
제조업	26212	유기 발광 표시장치 제조업
제조업	26219	기타 표시장치 제조업
제조업	26221	인쇄회로기판용 적층판 제조업
제조업	26222	경성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제조업	26223	연성 및 기타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제조업	26224	전자 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제조업	26291	전자 축전기 제조업
제조업	26292	전자 저항기 제조업
제조업	26293	전자카드 제조업
제조업	26294	전자코일, 변성기 및 기타 전자 유도자 제조업
제조업	26295	전자 감지장치 제조업
제조업	26299	그 외 기타 전자 부품 제조업
제조업	26310	컴퓨터 제조업
제조업	26321	기억 장치 제조업
제조업	26323	컴퓨터 프린터 제조업
제조업	26329	기타 주변 기기 제조업
제조업	26410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
제조업	26421	방송장비 제조업
제조업	26422	이동 전화기 제조업
제조업	26429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제조업	26511	텔레비전 제조업
제조업	26519	비디오 및 기타 영상 기기 제조업
제조업	26521	라디오, 녹음 및 재생 기기 제조업
제조업	26529	기타 음향기기 제조업
제조업	26600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제조업
제조업	27111	방사선 장치 제조업
제조업	27112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제조업	27191	치과용 기기 제조업
제조업	27192	정형 외과용 및 신체 보정용 기기 제조업
제조업	27193	안경 및 안경렌즈 제조업
제조업	27194	의료용 가구 제조업
제조업	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제조업	27211	레이더, 항행용 무선 기기 및 측량 기구 제조업
제조업	27212	전자기 측정, 시험 및 분석 기구 제조업
제조업	27213	물질 검사, 측정 및 분석 기구 제조업

대분류	표준산업분류코드	업무내용
제조업	27214	속도계 및 적산계기 제조업
제조업	27215	기기용 자동 측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
제조업	27216	산업 처리공정 제어장비 제조업
제조업	27219	기타 측정, 시험, 향해, 제어 및 정밀 기기 제조업
제조업	27301	광학 렌즈 및 광학 요소 제조업
제조업	27302	사진기, 영사기 및 관련 장비 제조업
제조업	27309	기타 광학 기기 제조업
제조업	27400	시계 및 시계 부품 제조업
제조업	28111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제조업	28112	변압기 제조업
제조업	28113	방전 램프용 안정기 제조업
제조업	28114	에너지 저장장치 제조업
제조업	28119	기타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제조업	28121	전기회로 개폐, 보호 장치 제조업
제조업	28122	전기회로 접속장치 제조업
제조업	28123	배전반 및 전기 자동제어반 제조업
제조업	28202	축전지 제조업
제조업	28301	광섬유 케이블 제조업
제조업	28303	절연 코드세트 및 기타 도체 제조업
제조업	28410	전구 및 램프 제조업
제조업	28421	운송장비용 조명장치 제조업
제조업	28422	일반용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
제조업	28423	전시 및 광고용 조명장치 제조업
제조업	28429	기타 조명장치 제조업
제조업	28511	주방용 전기 기기 제조업
제조업	28512	가정용 전기 난방기기 제조업
제조업	28519	기타 가정용 전기 기기 제조업
제조업	28520	가정용 비전기식 조리 및 난방 기구 제조업
제조업	28901	전기 경보 및 신호장치 제조업
제조업	28902	전기용 탄소제품 및 절연제품 제조업
제조업	28903	교통 신호장치 제조업
제조업	28909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제조업	29111	내연기관 제조업
제조업	29119	기타 기관 및 터빈 제조업
제조업	29120	유압 기기 제조업
제조업	29131	액체 펌프 제조업
제조업	29132	기체 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
제조업	29133	탭, 밸브 및 유사 장치 제조업
제조업	29141	구름베어링 제조업
제조업	29142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제조업	29150	산업용 오븐, 노 및 노용 버너 제조업
제조업	29161	산업용 트럭 및 적재기 제조업
제조업	29162	승강기 제조업
제조업	29163	컨베이어 장치 제조업
제조업	29169	기타 물품 취급장비 제조업
제조업	29171	산업용 냉장 및 냉동장비 제조업
제조업	29172	공기 조화장치 제조업
제조업	29173	산업용 송풍기 및 배기장치 제조업

대분류	표준산업분류코드	업무내용
제조업	29174	기체 여과기 제조업
제조업	29175	액체 여과기 제조업
제조업	29176	증류기, 열 교환기 및 가스 발생기 제조업
제조업	29180	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제조업	29191	일반 저울 제조업
제조업	29192	용기 세척, 포장 및 충전기 제조업
제조업	29193	분사기 및 소화기 제조업
제조업	29194	동력식 수지 공구 제조업
제조업	29199	그 외 기타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제조업	29210	농업 및 임업용 기계 제조업
제조업	29221	전자 응용 절삭기계 제조업
제조업	29222	디지털 적층 성형기계 제조업
제조업	29223	금속 절삭기계 제조업
제조업	29224	금속 성형기계 제조업
제조업	29229	기타 가공 공작기계 제조업
제조업	29230	금속 주조 및 기타 야금용 기계 제조업
제조업	29241	건설 및 채광용 기계장비 제조업
제조업	29242	광물 처리 및 취급장비 제조업
제조업	29250	음·식료품 및 담배 가공기계 제조업
제조업	29261	산업용 섬유 세척, 염색, 정리 및 가공 기계 제조업
제조업	29269	기타 섬유, 의복 및 가죽 가공기계 제조업
제조업	29271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제조업	29272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
제조업	29280	산업용 로봇 제조업
제조업	29291	펄프 및 종이 가공용 기계 제조업
제조업	29292	고무, 화학섬유 및 플라스틱 성형기 제조업
제조업	29293	인쇄 및 제책용 기계 제조업
제조업	29294	주형 및 금형 제조업
제조업	29299	그 외 기타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제조업	30110	자동차용 엔진 제조업
제조업	30121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
제조업	30122	화물 자동차 및 특수 목적용 자동차 제조업
제조업	30201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
제조업	30202	자동차 구조 및 장치 변경업
제조업	30203	트레일러 및 세미 트레일러 제조업
제조업	30310	자동차 엔진용 신품 부품 제조업
제조업	30320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
제조업	30331	자동차용 신품 동력 전달장치 제조업
제조업	30332	자동차용 신품 전기장치 제조업
제조업	30391	자동차용 신품 조향장치 및 현가장치 제조업
제조업	30392	자동차용 신품 제동장치 제조업
제조업	30399	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제조업	30400	자동차 재제조 부품 제조업
정보통신업	58211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정보통신업	58212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정보통신업	58219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정보통신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대분류	표준산업분류코드	업무내용
정보통신업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정보통신업	61100	공영 우편업
정보통신업	61210	유선 통신업
정보통신업	61220	무선 및 위성 통신업
정보통신업	61291	통신 재판매업
정보통신업	61299	그 외 기타 전기 통신업
정보통신업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정보통신업	62021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정보통신업	62022	컴퓨터시설 관리업
정보통신업	62090	기타 정보 기술 및 컴퓨터 운영 관련 서비스업
정보통신업	63111	자료 처리업
정보통신업	63112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정보통신업	63120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정보통신업	63910	뉴스 제공업
정보통신업	6399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정보통신업	63999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0111	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0112	농림수산학 및 수의학 연구개발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0113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0119	기타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0121	전기 · 전자공학 연구개발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0129	기타 공학 연구개발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0130	자연과학 및 공학 융합 연구개발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0201	경제 및 경영학 연구개발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0209	기타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2111	건축 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2112	도시 계획 및 조경 설계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2121	건물 및 토목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2122	환경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2129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2911	물질 성분 검사 및 분석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2919	기타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2921	측량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2922	제도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2923	지질 조사 및 탐사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2924	지도 제작업